
구 리 갈 매 역 세 권 공 공 주 택 지 구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019. 12



국 토 교 통 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 사 업 규 모 : 797,971m²
- 수용인구 및 세대 : 15,881인 / 6,426세대
- 사 업 기 간 : 지구지정 고시일(2018.07.04) ~ 2023. 12
- 사업시행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 인 기 관 : 국토교통부
- 협 의 기 관 : 환경부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2.1 주민의견 수렴 개요

- 본 사업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에 의거 공고·공람을 하였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본 사업이 위치한 사업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경기도 구리시청에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제출하여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주관(관할) 시·군·구 : 구리시
- 관계 행정기관 :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강유역환경청, 남양주시, 중랑구, 노원구
 - 2019.04.04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LH→환경부)
 - 2019.04.09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 2019.04.22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회 개최 (갈매동 행정복지센터)
 - 2019.05.22 : 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의견수렴결과 회신(구리시 환경과-11077)
 - 2019.06.05 : 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 2019.06.21 : 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무산
 - 2019.07.24 : 평가서(초안) 공청회 재개최 공고(변경)
 - 2019.08.23 : 평가서(초안) 공청회 재개최 (갈매동 행정복지센터)

2.1.1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및 공람

가. 신문공고

- 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19-417호
- 공고일자 : 2019년 4월 9일(화)
 - 중앙일간지 : 경향신문(2019년 4월 9일, 6면)
 - 지방일간지 : 중부일보(2019년 4월 9일, 6면), 시민일보(2019년 4월 9일, 4면)

나. 주민공람

- 공람기간 : 2019년 4월 9일 ~ 2019년 5월 9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2일간)
- 공람장소 : 구리시청 환경과, 갈매동행정복지센터, 남양주시 별내행정복지센터, 노원구청 녹색환경과, 중랑구 신내제1동주민센터
- 주민의견 제출기간 : 공람기간이 끝난후 7일이내 (2019년 5월 16일까지)

다. 공고 및 공람사실 게시

1) EIASS 홈페이지(<http://eiass.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환경영향평가소개](#)
[사업초회](#)
[협의통계](#)
[국민참여](#)
[건강영향평가](#)

국민참여

National participation

- 협의진행현황
-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
- 평가서 초안 공람**
- 사용자지원
- Q&A
- FAQ
- 공지사항

평가서 초안 공람 - 환경영향평가

■ 사업개요

사업명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구분	도시의 개발
사업지위치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담터길32번길 45) 일원
승인기관	국토교통부

초안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000 표지목록.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100 요약문.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200 사업의 개요.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300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400 지역개발.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500 평가항목범위 등의 심의결과.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611 등식물상.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612 자연환경자산.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621 기상.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622 대기질.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623 온실가스.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631 수질및수리수문.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641 토지이용.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642 토양.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643 지형지질.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651 친환경적자원순환.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652 소음진동.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653 경관.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654 일조장해.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655 전파장해.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661 인구주거.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700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800 불가피한 환경영향.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900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대책.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1000 대안설정 및 평가.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1100 종합평가 및 결론.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1200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여부.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1300 부록.pdf

초안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643 지형지질.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651 친환경적자원순환.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652 소음진동.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653 경관.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654 일조장해.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655 전파장해.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661 인구주거.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700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800 불가피한 환경영향.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0900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대책.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1000 대안설정 및 평가.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1100 종합평가 및 결론.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1200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여부.pdf
- * (초안)구리갈매역세권-1300 부록.pdf

초안공람

주민의견수렴

초안 공고일	2019.04.09
초안 공람 기간	2019.04.09 ~ 2019.05.09
공람 장소	구리시 환경과, 갈매동행정복지센터, 남양주시 별내행정복지센터, 노원구 녹색환경과, 종량구 신내제1동주민센터
설명회 장소	갈매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5층)
설명회 일시	2019년 4월 22일(월) 오후 2시
의견 제출 기한	2019.04.09 ~ 2019.05.16

구리시 날씨
맑음 12℃
기상청제공

시민참여	전자민원	열린행정	구리소개	분야별 정보
------	------	------	------	--------

열린행정

- [행정정보](#)
- [계약정보](#)
- [공공데이터](#)
- [정책실명제](#)
- [구리사소식](#)
- [공지사항](#)
- [문화행사](#)
- [입찰정보](#)
- [수의계약](#)
- [고시/공고](#)
- [입법예고](#)
- [모집공고](#)
- [도소식](#)
- [구리영상](#)
- [구리소식지](#)
- [전자시보](#)
- [보도자료](#)

고시/공고

☛ > 열린행정 > 구리사소식 > 고시/공고

2011년 2월 이전 자료를 보실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 이전자료 보기](#)
[▶ 모바일보기](#)

분류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19-417호	작성일	2019-04-04
담당부서	환경과		
제목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첨부	구리갈매역세권 한평(초안) 요약문.pdf 주민의견 제출서 서식.hwp 갈매역세권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공고문(2019-4-5).hwp		

1.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1730(2019. 4. 2)호와 관련입니다.

2.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일 : 2019. 4. 9

나. 공람기간 : 2019. 4. 9 ~ 2019. 5. 9 (토, 공휴일 제외, 22일간)

다. 공람장소 : 구리시청 환경과, 갈매동행정복지센터, 남양주시 별내행정복지센터, 노원구청 녹색환경과,

중앙구 신내제1동주민센터

라. 공람내용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마. 신문공고 : 중앙일간지 1회, 지방일간지 1회

3) 신문광고

경향신문(중앙일간지) (2019.4.9)

6 2019년 4월 9일 화요일

제22905호 경향신문

구리시 공고 제2019 - 417 호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구 리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구리시 갈매동 일원
- 사업규모 : 798,310㎡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9년 4월 9일 ~ 2019년 5월 9일
- 공람장소 : 구리시 환경과, 갈매동행정복지센터, 남양주시 별내행정복지센터, 노원구청 녹색환경과, 중랑구 신내제1동주민센터
-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장소에 비치)

3. 주민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9년 4월 22일 (월) 오후 2시
- 장 소 : 갈매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 (구리시 산마루로 24 신성타워 5층)

4.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2019년 5월 16일까지)
-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거 서면 제출
(양식은 공람장소 등에 비치)

5. 기 타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및 공고문은 구리시 홈페이지(www.guri.go.kr)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시하였으며,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일정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지 않고 본 공고에 갈음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공람 및 공고에 대한 사항은 구리시 환경과(☎031-550-2247)로 문의하여 주시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055-922-37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9일 화요일 | 중부일보

구리시 공고 제2019 - 417 호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구 리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구리시 갈매동 일원
- 사업규모 : 798,310㎡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9년 4월 9일 ~ 2019년 5월 9일
- 공람장소 : 구리시 환경과, 갈매동주민센터, 남양주시 별내행정복지센터, 노원구청 녹색환경과, 중랑구청 신내제1동주민센터
-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장소에 비치)

3. 주민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9년 4월 22일 (월) 오후 2시
- 장 소 : 갈매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 (구리시 산마루로 24 신성타워 5층)

4.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2019년 5월 16일까지)
-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거 서면 제출 (양식은 공람장소 등에 비치)

5. 기 타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및 공고문은 구리시 홈페이지(www.guri.go.kr)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시하였으며,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일정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지 않고 본 공고에 갈음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공람 및 공고에 대한 사항은 구리시 환경과(☎031-550-2247)로 문의하여 주시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055-922-37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566호 2019년 4월 9일 화요일

구리시 공고 제2019 - 417호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구 리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 위치 : 구리시 갈매동 일원
- 사업규모 : 798,310㎡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9년 4월 9일 ~ 2019년 5월 9일
- 공람장소 : 구리시청 환경과, 갈매동행정복지센터, 남양주시 별내행정복지센터, 노원구청 녹색환경과, 중랑구 신내제1동주민센터
-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정소에 비치)

3. 주민설명회 개최

- 일시 : 2019년 4월 22일 (월) 오후 2시
- 장소 : 갈매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 (구리시 산마루로 24 산설타워 5층)

4. 주민의견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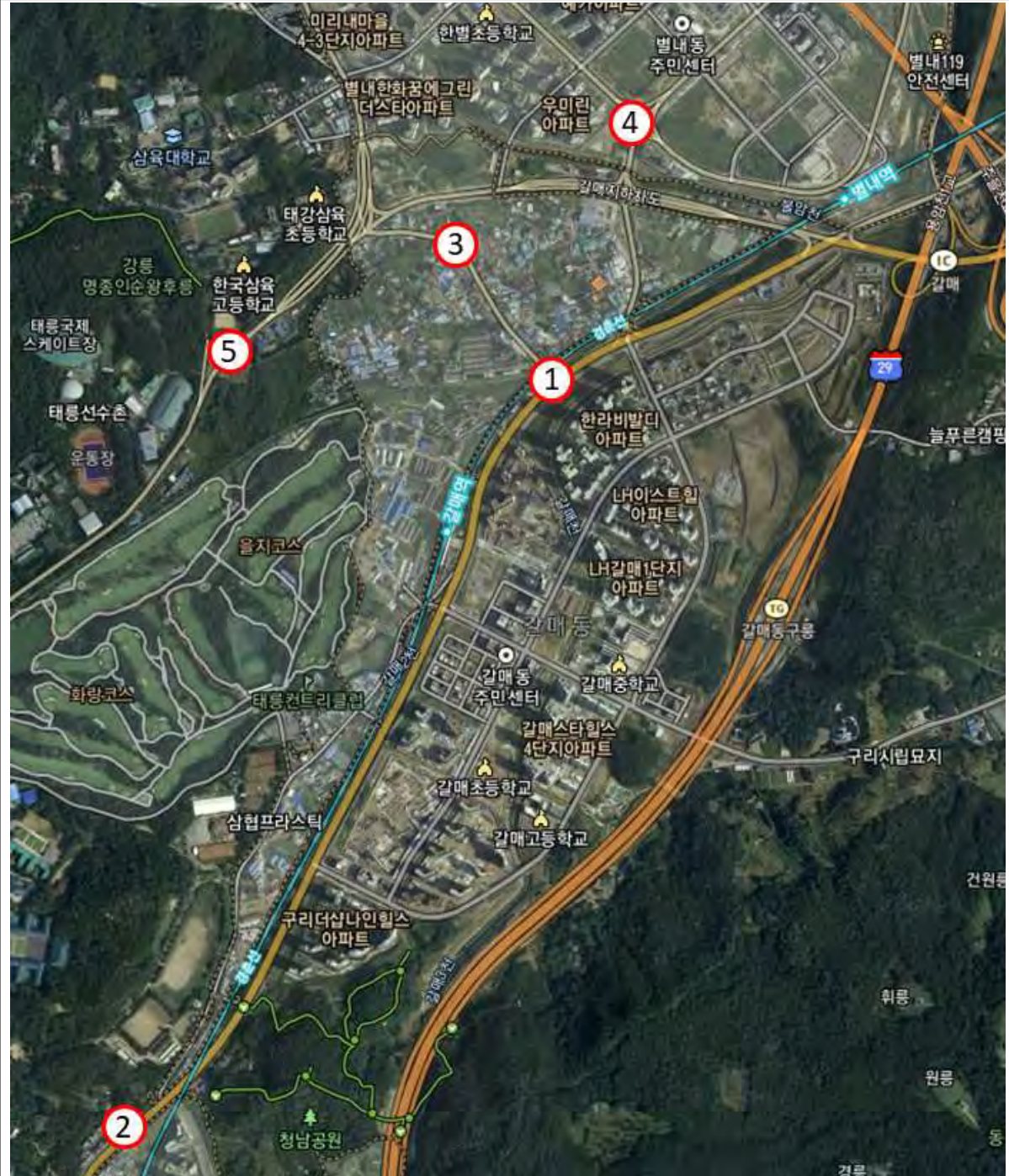
- 제출기간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2019년 5월 16일까지)
-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 서식에 외거 서면 제출 (양식은 공람장소 등에 비치)

5. 기 타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및 공고문은 구리시 홈페이지(www.guri.go.kr)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문시스템(www.eiass.go.kr)에 게시하였으며,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일정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지 않고 본 공고에 갈음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공람 및 공고에 대한 사항은 구리시 환경과(☎031-550-2247)로 문의하여 주시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055-922-37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수막을 활용한 주민홍보

구 분	현수막 설치 위치	비 고
1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236-7	구리시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산2-31	서울시 중랑구
3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213-4 인근	구리시
4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1033 북측 교차로 인근	남양주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6-59	서울시 노원구





① 사업지구 동측 (갈매동236-7)



②사업지구 남측 (중랑구 신내동 산2-31)



③사업지구내 (갈매동 213-4 인근)



④사업지구 북측(남양주 별내동 북측 교차로)



⑤사업지구 서측 (노원구 공릉동 26-59)

- 공 란 -

-

2.1.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가. 개요

- 개최일자 : 2019년 4월 22일(월) 오후 2시
- 개최장소 : 구리시 갈매동행정복지센터 5층 회의실
- 내 용 : 설명회 발표 및 질의응답 절차 이행 등

나. 개최 결과

- 주민 약 90명 참석(참석자명단 기준 12명)

다. 개최사진



라.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 민 설 명 회 참 석 명 부				
사 업 명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장 위치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명회 장소	갈매동 행정복지센터 5층 회의실	일 시	2019. 4. 22(월) 14:00	
일련 번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서 명
1	김	갈매동		
2	박	갈매동		
3	조	갈매동		
4	황	갈매동		
5	장	갈매동		
6				
7				
8				
9				
10				
11				
12				
13				
14				
15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 민 설 명 회 참 석 명 부				
사 업 명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장 위치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명회 장소	갈매동 행정복지센터 5층 회의실	일 시	2019. 4. 22(월) 14:00	
일련 번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서 명
1	김	갈매동		
2	이	갈매동		
3	정	갈매동		
4	서	갈매동		
5	박	갈매동		
6				
7				
8				
9				
10				
11				
12				
13				
14				
15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 민 설 명 회 참 석 명 부				
사 업 명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장 위치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명회 장소	갈매동 행정복지센터 5층 회의실	일 시	2019. 4. 22(월) 14:00	
일련 번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서 명
1	이			
2	정			
3	김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1.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결과

가. 주민의견서 제출 현황

- 제출기한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2019년 5월 16일까지)
-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거 서면 제출 (양식은 공람장소 등에 비치)

[표 6.1-1]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 제출 방법에 따른 현황

계 (인원)	주민의견 제출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제출
62 (중복건수 4건 및 서식의 1건 제외)	67 (5건 포함)	없음

[표 6.1-2]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요약)

구 분	주요 내용	의견 분류
사업계획 및 지구지정 변경	- 중·저밀도 개발계획 재수립 요구 - 훼손지복구계획 수립, ○ 단독주택지 위치 조정요구 - 수용인구 및 세대 내용중 단독주택의 수용인구 예측 - 단독주택 위치변경 요구	25건
보상 및 이주대책	- 현실보상(실거래가, 시가보상) 요구 - 양도소득세 면제 요청 - 각종 사업장에 대한 대체 부지 및 이주대책 방안 - 건물주의 임차인 등 관계인에 대한 경제적 피해저감대책	26건
환 경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미제시 - 평가대상지역 설정 (협의회 심의결과) 부적절 - 현장 조사시 주민 참여 요구 - 전파장해에 대한 재조사 요구 등 - 설명회 재개최 요구 (25건)	53건
교 통	○ 광역교통대책 수립	7건
기 타	○ 의견없음	1건
총 계		112건 (1인 복수의견포함)

나. 공청회 개최 여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함

[표 6.1-3] 공청회 개최 여부

구 분	주민의견서 제출	공청회 개최 요구	공청회 개최 미요구	미기재
제출인원	62명	43명	4명	15명
○ 공청회의 개최 법적요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 1.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 수의 50% 이상인 경우				

2.1.4 공청회 개최 결과

가. 공청회 개최

1) 신문 및 구리시 홈페이지 공고

- 공고일자 : 2019년 6월 5일
- 일간신문 공고
 - 경향신문(중앙일간지), 경기일보(지방일간지), 시민일보(지방일간지)
- 구리시 홈페이지 공고 : 구리시 공고 제2019-717호
- 현수막 설치 : 사업지구 내외 총 5개소

2)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9년 6월 21일 (금) 오후 2시
- 장 소 : 갈매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구리시 산마루로 24 신성타워 5층)

3) 개최 결과

- 공청회 개최 결과 : 무산
- 무산사유 : 주민 개최방해(약 15명이 공청회 장소 입구를 점거하여 주민입장 불가)
- 공청회(1차) 주재자 : 이상문 교수(협성대학교)



4) 구리시 홈페이지(19.06.05) 및 신문광고



2011년 2월 이전 자료를 보실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 이전자료 보기

▶ 모바일보기

분류	공고(일반공고)	작성일	2019-06-05
고시 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19-717호	게재제 호	
담당부서	환경과		
제목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첨부	구리갈매역세권 공청회 공고문.hwp 구리갈매역세권 의견진술자 추천서 서식.hwp		

1. 환경과-10074(2019.5.10)호 및 환경과-1111392019.5.22)호와 관련입니다.

2. 구리갈매역세권 공공 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공청회 개최 요건이 성립되어 한국토지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9년 6월 21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갈매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구리시 산마루로 24 신성타워 5층)

다. 기타사항

- 의견진술자를 추천하고자 할경우 2019년 6월 14일(공청회 개최 7일전)까지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구리시 환경과(T.031-550-2247, Fax.031-550-2249)로 제출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 계획규모 : 798,310㎡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9년 6월 21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갈매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
(구리시 산마루로 24 신성타워 5층)

3. 기타사항

-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2019년 6월 14일(공청회 개최 7일전)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구리시 환경과(T.031-550-2247, F.031-550-2249)로 제출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 (☎055-922-3713) 및 구리시 환경과(☎031-550-22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 계획규모 : 798,310㎡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9년 6월 21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갈매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구리시 산마루로 24 신성타워 5층)

3. 기타사항

-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2019년 6월 14일(공청회 개최 7일전)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구리시 환경과(T.031-550-2247, F.031-550-2249)로 제출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055-922-3713) 및 구리시 환경과(031-550-22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5일

LH 한국주택토지공사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 계획규모 : 798,310㎡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9년 6월 21일(금), 오후 2시
- 장소 : 갈매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구리시 산마루로 24 신성타워 5층)

3. 기타사항

-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2019년 6월 14일(공청회 개최 7일전)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구리시 환경과(T.031-550-2247, F.031-550-2249)로 제출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055-922-3713) 및 구리시 환경과(031-550-22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5) 사업지구 일원 현수막 설치(2019.6.5)

구 분	주 소	설치사진
1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236-7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산2-31	
3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213-4 인근	
4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1033 북측 교차로 인근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6-59	

나. 공청회 재개최

1) 신문 및 구리시 홈페이지 공고(변경)

- 공고일자 : 2019년 7월 24일
- 일간신문 공고
 - 서울신문(중앙일간지)
 - 경인일보(지방일간지)
 - 시민일보(지방일간지)
- 구리시 홈페이지 공고 : 구리시 공고 제2019-897호
- 현수막 설치 : 사업지구 내외 총 5개소

2)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9년 8월 23일 (금) 오후 1시
- 장 소 : 갈매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구리시 산마루로 24 신성타워 5층)

3) 개최 결과

- 정상개최 여부 : 정상개최
- 참석 인원 : 약 30명 (참석자 명부상 3명)
- 공청회 주재자 : 이상문 교수(협성대학교)
- 의견진술자(주민측) : 4인
- 의견진술자(사업자측) : 5인





4) 구리시 홈페이지 공청회 재개최 공고(변경) 및 신문공고

계약정보

공공데이터

정책실명제

구리시소식

- 공지사항
- 문화행사
- 입찰정보
- 수의계약
- 고시/공고
- 입법예고
- 모집공고
- 도소식
- 구리영상
- 구리소식지
- 전자시보
- 보도자료

행정서비스현장

법령/자치법규

재정현황

주민참여예산

지방공기업

청렴한 구리시

2011년 2월 이전 자료를 보실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 이전자료 보기](#) [▶ 모바일보기](#)

분류	공고(일반공고)	작성일	2019-07-23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19-897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환경과		
제목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재개최 공고(변경)		
첨부	구리갈매역세권 공청회 재개최 공고문(변경).hwp 붙임2.(구리갈매역세권) 의견진술자 추천서(서식).hwp		

1. 구리시공고 제2019-854(2019.7.11)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4361(2019.7.22)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근 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공청회의 개최 등)

나. 공청회 일시 및 장소(변경)

- (변경) 일시 : 2019년 8월 23일(금), 오후 1시
- 장소 : 갈매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구리시 산마루로 24 산성타워 5층)
- (당초) 일시 : 2019년 7월 26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2층 다목적실(구리시 체육관로 74)

다. 기타사항)

- 의견진술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 2019년 8월 19일(공청회 개최 7일전)까지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구리시 환경과(Tel.031-550-2247, Fax.031-550-2249)로 제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재개최 공고(변경)**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19.7.11(목) 공
고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 사 업 명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 계획규모 : 798,310㎡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변경)

- (변경) 일시 : 2019년 8월 23일(금), 오후 1시
장소 : 갈매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
(구리시 산마루로 24 신성타워 5층)
- (당초) 일시 : 2019년 7월 26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2층 다목적실
(구리시 체육관로 74)

3. 기타사항(변경)

-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2019년 8월 19일(공청회
개최 7일전)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2]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구리시 환경과(T.031-
550-2247, Fax.031-550-2249)로 제출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
(055-922-3713) 및 구리시 환경과(031-550-224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4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재개최 공고(변경)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19. 7. 11(목) 공고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 사 업 명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 계획규모 : 798,310㎡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변경)

- (변경) 일시 : 2019년 8월 23일(금), 오후 1시
장소 : 갈매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
(구리시 산마루로 24 신성타워 5층)
- (당초) 일시 : 2019년 7월 26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2층 다목적실
(구리시 체육관로 74)

3. 기타사항(변경)

-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2019년 8월 19일(공청회 개최 7일전)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구리시 환경과(T.031-550-2247, Fax.031-550-2249)로 제출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055-922-3713) 및 구리시 환경과(031-550-22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4 제4640호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시민일보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재개최 공고(변경)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19.7.11(목) 공고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 사업명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 계획규모 : 798,310㎡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변경)

- (변경) 일시 : 2019년 8월 23일(금), 오후 1시
장소 : 갈매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구리시 산마루로 24 신성타워 5층)
- (당초) 일시 : 2019년 7월 26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2층 다목적실(구리시 체육관로 74)

3. 기타사항(변경)

-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2019년 8월 19일(공청회 개최 7일전)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구리시 환경과(T.031-550-2247, Fax.031-550-2249)로 제출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055-922-3713) 및 구리시 환경과(031-550-22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5) 사업지구 일원 현수막 설치(2019.7.25)

구 분	주 소	설치사진
1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236-7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산2-31	
3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213-4 인근	
4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1033 북측 교차로 인근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6-59	

2.2 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

구 분	의 견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초안 설명회	참석 주민 ※ 이름을 밝히지 않아 “참석주 민”으로 표현	○지하수 GW-1, GW-2 전략환경평가시 와 동일한 지점에 조사 사유	○동일한 지점 선정 이유는 수질변화를 연속 적으로 조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시와 환경영향평가 시의 수질 변화 경향성 분석 하기 위함임을 설명함	반영
		○평가항목에 “산업”분야 제외사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정에 따름 ○“사업의 특성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 미”하여 평가항목에서 제외(사업지구내 산 업시설의 입지계획이 없음) ○별도의 항목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7.4.1 토지이용 평가항목에 구리시 및 인 근지역 산업현황을 조사하여, 산업변화 예 측 결과를 제시함	부분반영
		○대면심의 생략(서면심의 선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2호 를 근거로 함 즉, “사업과 유사한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여러번 제출되 어 심의된 경우”에 해당되어 대면심의를 생략하였음	-
		○악취항목 제외 사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시 평가항목에서 제외 하는 것으로 결정을 따름 -평가서초안에서 사업지구내 오수처리설 설치계획이었으나, 구리공공하수처리시설 로 연계처리 계획으로 변경됨(2019.8)에 따라 악취항목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함	-
		○전략환경평가서 평가항목 등의결정 심의 적절성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 무효확인 소송(집행정지 신청) 행정법원의 소송결과 (2019.6.14.) 반영(심의 적절하였음)	-
		○주민 입회하 환경질 조사 실시	○환경질 조사 계획서를 사전에 공유하여 2019년 5월 20일~22일 조사시 주민대책 위의 입회 참관을 요청드렸으나, 입회 참 관 거부로 환경질 조사 중 방문하여 진행 중임을 알림(주민 입회하 환경질 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부분반영

구 분	의 견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초안 설명회	참석 주민 ※ 이름을 밝히지 않아 “참석주 민”으로 표현	○전략환경평가시 “전파장해”검토 신뢰성 (공간적 피해현황 누락됨)	○전파장해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전파연구소 통신 시설”의 전자계 측정(2018.3), TV 수신장 해 조사, 전파장해 예측 결과를 인용하여 제시하였음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 정」 에 “전파장해”의 작성방법에 따라 전 파연구소 통신시설 주변 총 4개 지점(약 50m~560m이격) 선정, 공간적 영향 고려 하였음 ○전자계 조사는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 2014-2호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에 따라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측정 결과 전파장해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반영
		○설명회 재개최 요구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동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2019년 4월 9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 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를 하였고, 주민 등 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4월 22일 설명 회를 개최하여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항임	반영
		○대기질 환경기준 단위 적정성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상의 오기사항임 ○금회 환경영향평가시의 대기질 환경기준 단위는 바르게 작성하여 제시하였음	반영

구 분	의 건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평가서 초안 공람	한0석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최종협의내용(환경부)에 “쾌적한 생활환경과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은 중·저밀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으로 협의하였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단독주택 180세대 / 공동주택 7,010세대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단독주택 135세대 / 공동주택+주상복합 6,704세대 인근 별내지구, 갈매보금자리지구보다 고밀도로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환경부와 협의한 중·저밀도 개발이 아니므로 중저밀도로 개발계획 재수립 요망 ※사업면적 대비 공공주택 면적 검토하시면 지구별 밀도 예측 가능	○ 공공주택지구는 정부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으로, ○ 당초 지구지정 시에 비해 공원·녹지율 상향 조정, 학교·유치원 등을 추가 확보하였고, 인구밀도는 199인/ha(평균 용적률 185%)로 계획함	반영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최종협의내용(환경부)에 “생태면적을 달성 목표는 45%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으로 협의하였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10page에 토지환경분야의 계획 생태 면적을 41.5%로 계획하였음. 생태면적을 45%로 계획 재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재작성 요망	○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 반영을 통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생태면적율은 42.9%로 계획함	부분 반영
	하0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배껴와서 설명회 진행을 못했습니다. 전략공청회에서 60여가지 위법사실이 드러나고 현재 행정소송 중임에도 환경영향평가서는 1년전이나 후에나 똑같은 데이터 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벼룩도 낫짜이 있다고 했는데 정부, 국가사업이라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것 인지? 공공주택 특별법이 공공주택 강도 법인지 수탈로 시작해서 추기나 일삼자는 것인지 역사와 국민이 묻습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총429건)에 대하여 주민의견 내용 공개절차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지한 바(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8-812호, 2018.6.20)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초안)(2019.4)에 주민의견 반영 여부 내용을 14장 부록편에 제시함 ○ 전략환경평가서의 절차적 위법성 관련 행정소송 결과 법령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난 사항임(2019.6.14)	반영
		○ 환경영향평가서 p752(훼손지 및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복구 등)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분담금 납부하는 말도안되는 짓을 멈추기 바란다. 쓰레기 소각장 분담금 역시 거부 의사를 밝힌다. 탄소리 말기 바란다.	○ 훼손지 복구계획은 지구 내 남측 일부와 지구 밖 장자생태호수공원(장기미집행 공원) 4단계 일부를 조성하기로 구리시와 협의 중인 사항임	반영

구 분	의 견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평가서 초안 공람	김O규 외24명	○첫째 내 땅이 수용하는 것을 원치않는다. 그러나 강제로 빼앗기는 것은 더구나 싫다. 하지만 분명히 국토부나 LH에 분명 요구사항은 있다. 첫째 : 현실보상하라(실거래보상, 시가보상)	○토지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하여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그리고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각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 선정된 감정평가사 3인의 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 고유의 업무 영역으로서 토지보상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환경 및 도로조건, 실제 토지 이용상황, 표준지 공시지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진행함.	반영
		둘째 : 양도소득세 면제하라(강제수용이며 헐값보상이며 일방적인 당신들에 의한 매매계약이다.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70조, 제77조에 의거 세액을 감면 또는 징수함.	
		셋째 : 각종사업장에 대한 대체부지 및 이주대책 수립하라	○이주대책(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대토)의 공급방안은 지구계획 승인내용, 관련법령·규정, 대상자의 인원수·자격유무 등에 따라 수립할 계획임	
		넷째 : 현. 처한 경제적 피해 대책 수립하라 그리고 그린벨트지점으로 인한 재산권 가치권에 대한 보상하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거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동 법 제68조에 의거하여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그리고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각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 선정된 감정평가사 3인의 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 고유의 업무 영역으로서 토지보상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환경 및 도로조건, 실제 토지이용상황, 표준지 공시지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진행함.	

구 분	의 견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평가서 초안 공람	박O주 외29명	○ 4월22일 실시간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다시 개최하라 이번 설명회는 무산이 아니고 무효다 평가서 내용이 거짓이다. 주민들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못했다. 행정소송 진행중인 전략환경평가서 위법성을 그대로 복사했다. 주민설명회 다시하라.	○ 4월22일 개최된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절차에 따라 신문공고, 주민공람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이행 등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 ○ 전략환경평가서의 절차적 위법성 관련 행정소송 결과 법령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남(2019.6.14)	-
평가서 초안 공람	배O규	○ 주민 땅을 빼앗아 국방부에 군사시설로 주는 것이 주거복지 로드맵의 목적이 아니니 취소하라	○ 토지이용계획상 군사시설은 당초 국방부 소유부지를 현재 시설(태릉C.C)과 연결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획되었음	-
	유O상	○ 현재 국토부 LH 그리고 구리시에서는 공공주택 가구수 숫자채우기 졸속행정으로 갈매동 금싸래기 땅을 주민들 의견을 묵살하고 지장물 조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LH는 지장물 조사를 중단해주십시오. 나라가 깡패도 아니고 강제로 땅 내놔 집 짓게하면 짓는건지.. 이미 주민 90%이상 반대 했는데도 사업을 강행하는 LH는 물러가라	○ 「공공주택특별법」 제2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임	반영

구 분	의 견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평가서 초안 공람	이O목	○ 육사 골프장(태능CC)주변에 군사시설로 계획된 대토는 특혜로 계획을 취소하라. -청년 신혼부부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인데 육사 골프장 주차장을 위한 대토는 취소하라. -주민 땅을 빼앗아 국방부에 군사시설로 주는 것이 주거복지 로드맵의 목적이 아니니 취소하라 -취소하지 않으면 주민에게도 똑같이 1:1로 대토를 보장하라 내용 : 갈매동 490, 490-1 갈매동 산 109-2, 산109-16, 산109-82, 산109-83 - 총 11,008㎡ 대토 : 11,012㎡(약3,300평)을 국방부에 1:1로증(환경영향평가서 28,29페이지지재)	○토지이용계획상 군사시설은 당초 국방부 소유부지를 현재 시설(태릉C.C)과 연결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획되었음	반영
	장O순 외5명	○사업지구내 단독주택지 위치 변경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단독주택지 위치를 조정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함	반영
	이O일 외6명, (주)아O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책 (광역교통계획 수립)	○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사업임에 따라 별도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함	-
	장O순	1. 육사골프장(태능CC)주변에 군사시설로 계획된 대토는 특혜로 계획을 취소 또는 주민에게 돌려달라 ○ 청년, 신혼부부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에 군 골프장 주차장을 위한 대토란 웬말이나 2.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지의 위치를 변경하라 ○ 남측 단독주택지는 학교까지의 통학거리가 너무먼 지역임	○토지이용계획상 군사시설은 당초 국방부 소유부지를 현재 시설(태릉C.C)과 연결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획되었음 ○학교 위치는 전체적인 부지형상과 주거용지별 학생발생율 등을 고려하여 중앙공원에 연결하도록 계획함	반영

구 분	의 견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평가서 초안 공람	김O운	○주민땅은 빼아서가고 육사 골프장 태능CC 주차장확보하겠다고 3,300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내에 토지이용 계획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이 호구나 주민땅 빼앗아 육사골프장 주차장하라고 주는거냐 대한민국 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나 태능 골프장을 위한 법이나, 주민들에게 반드시 대토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두눈뜨고 똑똑히 들여다볼 것이다. 피를 토하게 하리다.	○토지이용계획상 군사시설은 당초 국방부 소유부지를 현재 시설(태릉C.C)과 연결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획되었음	반영
	최O순	○담터 도랑굿터는 사업지구에서 제외하여 보존시켜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다시 개최하라.	○담터 도랑굿의 굿당을 포함하여 지구계 설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검토되어 지정고시된 사항임	-
	이O근 외1명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지의 위치를 변경하라 -사업지구내 북측 단독주택지는 일조장해가 심한지역임 (B1 A1 공동주택 및 근생으로 인한 영향)	○사업지구내 단독주택지의 위치를 조정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음.	반영
		-사업지구내 남측 단독주택지는 학교까지 통학거리가 너무 먼지역임 -북측 남측 단독 주택지 모두 갈매역에서 가장 먼지역이며 중심 상업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너무 불편한 지역임	○학교 위치는 전체적인 부지형상과 주거용 지별 학생발생을 등을 고려하여 중앙공원에 연결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단독주택지 위치를 조정함 ○공공청사, 문화시설 이용성을 고려하여 단독주택지 배치계획을 수립함	반영
		-이주주택지(단독주택지)가 점포겸용 55호 주택전용 80호인데 대상자 파악후 가급적 원주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숫자 확보 요망	○단독주택지는 지구계획 승인신청 시에서 추가 배치할 예정이나, 지구계획 수립단계에서 대상자 파악 후 세대수를 확정하는 것은 어려움	반영

구 분	의 견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평가서 초안 공람	하O영	- 담터 도당곳의 곳당은 보존시켜야 한다 -갈매동(담터길 18-11외) 담터 도당곳터는 사업지구에서 제외시켜 보존 시켜야 한다. -현재 경기도 무형 문화재 15호인 갈매동 산치성 도당곳은 담터 도당곳과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존시켜야 할 사유가 있음	담터 도당곳의 곳당을 포함하여 지구계 설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검토되어 지정고시된 사항임	-
	유O자	- 전파장해조사 자료에 전파연구소 통신시설에 대한 거리별, 공간별 측정자료 없음 -전파장해는 전파연구소 통신시설(탑2개)에서 거리별 고도별로 조사해야함. -갈매역에서 가까운 곳이며 전파연구소 근거리 에 예정된 공동주택 및 학교용지 주변에는 측정지점이 없음 -측정 조건 중 전파연구소 통신시설의 가동 유무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시간 및 횟수도 오전, 오후로만 기록되어 있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없음	- 전파장해에 대한 현황조사, 영향예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단계에서 검토되었고, 검토결과 영향 없는 것으로 예측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절차적 위법성 관련 행정소송 결과 법령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남 (2019.6.14)	반영
	이O숙	- 전파장해 조사자료에 전파연구소 통신시설에 대한 거리별, 공간별 자료없음 - 육사에서 사용하고있는 구리시 행정구역 내 토지 승마장, 축구장, 테니스장을 사업지구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전파장해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결과 전파장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전파연구소 통신시설 주변 총 4개 지점 (약50m~560m이격) 선정하여 영향을 고려하였고, 전자계 조사는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4-2호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측정함 - 지구계 설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검토되어 지정고시된 사항임	반영
	하O성	아래 첨부#1 참조 (내용제시요약 17개 분류) [주민대책위 검토의견]	아래 “첨부#1” 참조	-
	한O석	아래 첨부#2 참조 15가지 분류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2019.4.LH공사) 문제점 체크리스트	아래 “첨부#2” 참조	-

■ 첨부#1 (내용제시요약 17개 분류) [하O성 주민대책위장 검토의견 반영여부]

쪽수	내용제시 요약	검토 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 고
25	사업 배경 및 목적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이미지	1) 친환경적이고 지 속가능한 발전 2) 환경영향 최소화 3) 환경영향 예측과 분석 4) 누적된 철도, 지 하철과 교통소음, 자 동차 배출가스, 매립 사업장 폐기물 악취 등의 환경영향을 체 계적으로 현장 실측 분석하고 10년과 50 년 주기적인 누적 영 향을 검토, 분석하는 예측 기법 확립이 필 수적	사업배경 및 목적은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 택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의 배경 및 목 적을 제시한 것임 1)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제시된 바와 같이 환경 영향평가의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 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별도로 평가서에 기술하지 않은 것임 2) 환경영향 최소화, 3) 환경영향예측과 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환경현황 조사, 영 향을 예측과 분석을 실시한 내용을 각항목별 로 기술하였음 4) 대기, 소음진동 등의 환경현황 조사를 실 시하였고, 누적영향을 검토, 분석하는 예측기 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작성하였고, 사업지구내 발생오수는 사업지구내 신설 하수처리시설 설치에서 구 리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는 계획한 바, 악취평가항목은 제외함	반영

쪽수	내용제시 요약	검토 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 고
26	사업의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 2018.6.20; SEA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1) SEA에서 주민의견 반영 25%인데도 EIA 초안 추진	○ 전략환경평가시 주민 의견 반영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812호 (2 0 1 8 . 6 . 2 0) [공 개 기 간 2018.6.20~2018.7.3]로 의견수렴결과와 반영여부를 공개함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2장 사업의 개요” 및 “14장 부록편”에 그 사실을 제시하였음	반영
			○ 2019년 4월 22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토지이용계획 등의 조정 및 변경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반영함	반영
		2) 개발 전 현장 실측 자료 없이 환경영향평가, 사후 환경영향 조사 불가능	○ 현장 실측 자료 : 평가협의회 결정 (2017.11)에 따라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에 대하여 환경질 조사(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토양 등) 및 동식물상 조사를 실시하였고, 평가항목별(중점평가항목 13, 현황조사항목 4)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작성하였고,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등작성등에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제시함	반영
		3) 평가 항목 6개 분야 21개 항목의 환경인자를 재조정 필요	○ 평가항목등에 관한 결정사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따라 6개분야 17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함.	미반영

쪽수	내용제시 요약	검토 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 고
36	환경영향평가 평가 대상지역 설정 -협의회 심의 결과	1) 공사시 중요 환경영향 평가 항목 대상 지역 누 락	○공사시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의 설정은 평가협의회 결정에 따라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영 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환경영향 평가서(초안)에 제시하였음	반영
		2) 토양 악취, 취업근로 자, 산업, 공간적 전파장 해, 소음피해	○사업지구내 신설하수처리장 설치 계획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악취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함	미반영
			○산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정에 따라 별도의 항목으로 평 가하지 않았으나, 7.4.1 토지이 용 평가항목에 구리시 및 인근지 역 산업현황을 조사하여, 산업변 화예측 결과를 제시함	반영
			○전파장해 : 전략평가시 “환경영향 평가서등 작성등에관한규정” 및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수행하였고, 사업지구 내·외 문헌 조사 관련 내용을 본안 평가시 제시함	반영
37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 1, 2차 현장, 문헌 조사 자료 부실	1) 공사 전 자료가 4계절 로 실제 조사되어야만 사 후 영향평가 가능	○평가협의회 “평가항목별 평가범 위 및 방법(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에 따라 환경질 조사횟수는 환경영향평가시 2회 이상 실시함 (대기질을 제외한 나머지 현황조 사 항목은 1회 추가 조사함)	반영
		2) 현장 조사시 주민 참여 가 반드시 필요	○동식물상 조사는 식생이 왕성한 시 기 등을 포함하여 여름(8월), 가을 (10월), 겨울(12, 1월)조사를 실시 하였고, 봄철(5월) 조사를 실시함	
			○환경질 조사 계획서를 사전에 공 유하여 2019년 5월 20일~22일 조사시 주민대책위의 입회 참관 을 요청드렸으나, 입회 참관 거 부로 환경질 조사 중 방문하여 진행 중임을 알림	-
			○계절조사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봄철(5 월)조사를 실시하였음	

쪽수	내용제시 요약	검토 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 고
141	조사 지역의 조류 목록	제비가 조류 목록에서 누락	○제비는 대표적인 여름철새로 서울시 조례에 의한 서울시보호종으로서 전략 환경평가시 문헌조사로 확인되었고, 전략평가 현지조사시에는 제비의 도래 시기와 상이한 시기에 조사가 되어 확인이 되지않았으나, 환경영향평가단계 (2018.8, 2019.5)에서 제비가 확인되어 제시함	반영
225	현지 조사	1) 대기질 조사 시기는 4 계절 별로 조사(주민참여)	○평가협의회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환경영향평가관련)”등의 결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2회 이상 실시함	반영
		2) SEA 1차 조사 시기, 조사 자료는 신뢰성 미흡	○전략환경평가 환경질 측정 1차 조사시기는 2018년 10월에 진행되었고,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토양 현황조사는 측정업 면허를 갖춘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음 ○항목분석은 수질,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등의 공정시험기준에 의거 실시하였으며, 세부측정 사진대지 및 성적서를 전략환경평가서 본안 부록편 (p477,497)에 제시한 바 있음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부록편
226	공간적 범위	A-3는 삼육대학교가 아니고 삼육 초등학교 옥상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제시된 A-3 지점의 주소는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815”이고 “삼육대학교”와 “태강삼육초등학교”는 동일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삼육대학교에 있는 “태강삼육초등학교”로 세부 건물위치로 정정함	반영

쪽수	내용제시 요약	검토 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 고
243	발생원별 PM-10	PM-10 및 TSP 배출계수는 PM-10과 PM-2.5의 상관 계수 적용	○PM-10과 PM-2.5의 상관 계수를 건설 활동에 따른 PM-10 및 TSP 배출계수에 적용하기에는 현재 국내 자료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PM-2.5 다량 배출 사업장 성분비 구축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II), 2014.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미국환경보호청(U.S EPA)에서 제시된 발생원별 PM-10 및 TSP 배출계수를 적용하였으며, PM-10과 PM-2.5의 상관계수는 「PM2.5 대기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2009, 국립환경연구원」 및 「PM2.5 환경영향평가 방안 연구, 201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 결과로 제시된 발생원에 따른 PM-2.5/PM-10 비율을 적용하여 영향 여부를 예측하였음.	반영
260	운영시	예측 항목에 CO, SO ₂ , O ₃ 포함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시, 운영시 CO, SO ₂ , O ₃ 은 유사사업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 예측에서 제외함	반영
270	예측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 초과에 대한 대안 제시 미흡 (288페이지; 10KMH 이하)	○초미세먼지(PM-2.5) 예측시 연평균 농도(환경기준 연평균 15 μ g/ m ³) 초과 원인은 현황농도가 환경기준을 이미 초과하였기 때문이며,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가중농도는 현황농도 대비 최대 0.9%의 기여도로 나타나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 되어 적정 수준의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음.	반영
332	조사 지점	1) GW-1(농장) 장기 폐쇄도 지하수 채수 곤란 지역	○GW-1 주소는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6-18인근으로 전략환경평가시와 금회 환경영향평가시 동일지점으로서, 채수지점은 관리인 협조를 얻어 지하수임을 확인하였고, 동일 부지내 건물내에서 채수한 것임	반영
		2) 왕숙 A-4(용암천) 지표수질 조사지점 위치 (확인 필요)	○용암천(왕숙A4) 환경부에서 운용중인 “하천수 수질측정망 지점”의 하나이고, 남양주시 별내동(퇴계원교)에 위치하고 있음	반영

쪽수	내용제시 요약	검토 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 고
334	조사 결과	1) W-1 조사지점의 수질 재조사 필요(BOD 1.7mg/L; 너무 낮음)	○W-1 조사지점에 대한 전략평가시 (2017.10) 주민의견은 수질상태가 악취가 날 정도로 나쁨에서 매우나쁨 등급으로 의견을 주셨으나, 당시 검토결과 현지조사시 악취는 미확인, 적은유량이나 정체구간은 없는 것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2018.6.4)시에 기 소명된 바 있음 ○금회 평가시 W-1지점의 경우 갈매수질 복원센터의 처리수가 방류되고 있는 지점으로(갈매천 하천유지용수로 이용중) 방류수가 하천유지용수로 이용됨을 고려할 때 수질상태(BOD 1.7mg/L)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반영
		2) 대장균군수 누락	○환경정책기본법에 제시된 하천수질(지표수질) 항목인 “총대장균군”과 “분원성 대장균군”으로 구분되고, 이중에서 하천오염도 지표로 많이 분석하는 “총대장균군”에 대하여 1차~4차 조사시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반영
338	지하수질 조사결과	NO ₂ -N 항목이 없는데 제시 하였고, NH ₃ 와 NO ₃ -N등 누락	○환경질 측정 3차 조사시 지하수측정망 문헌조사(국가환경 DB문헌조사(환경부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결과를 제시와 병행하여 GW-1, GW-2 지점에서의 질산성 질소(NO₃-N)항목에 대한 실측 조사를 실시하여 제시함	반영

쪽수	내용제시 요약	검토 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 고
343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홍수에 의한 토양 유실 대책과 매립 폐기물, 오염 토양, 침출수 악취 조사 필요	○ 홍수에 의한 토양(토사)유출 대책 : 공사시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에 대한 개발 전·중·후로 구분하여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침사지 등)을 제시하였음	반영
			■ 매립폐기물, 오염토양 조사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고시, 환경부고시 제2009-264호, 환경부」에 의거 구리시는 관내 폐기물 매립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하나, ○ 사업지구가 위치하는 구리시청 자원행정과 문의결과, 현재 구리시 관내 운영중인 매립장은 없으며, 매립이 요구되는 폐기물은 전량 성상별로 선별하여 수도권 매립장으로 이송처리됨 ○ 과거 사업지구 내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의 경우 현 단계에서 확인이 어려우므로 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따라 토지굴착 중 발견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전량 전문처리업자를 통해 위탁처리할 계획임	반영
			○ 또한, 불법폐기물 바닥 및 주변 토양층의 토양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을 초과한 토양은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61호, 2016.12.30.)에 의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절한 오염된 토양의 범위와 고려할 사항 및 정화방법을 선정하여 처리할 계획임	반영
			■ 침출수 ○ 한편,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불법 매립된 폐기물로 인한 장기적인 토양오염, 침출수의 발생, 악취 발생으로 인한 영향예측을 실시하였고, 불법 매립폐기물 발견시에 대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함	반영

쪽수	내용제시 요약	검토 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 고
383	오수 처리계획	1) 오수와 하수 처리 계획을 하수 처리계획으로 수정 필요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제시한 오수처리 계획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 이어 오염된 물(=오수)과 건물,도로 그밖 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 되는 빗물, 지하수를 포함한 물에 대한 ” 하수처리계획“을 기술한 것임. 지구계획 승인신청서 등의 계획 및 설계자료에 근거하여 하수(오수)처리계획으로 병기하 여 제시함	반영
		2) 하수처리시설 선정시 사전 고려사항, 위치선 정, 처리시설 특정 유형 별 장단점 제시	○평가서초안의 사업지구내 신설하수처리 장 설치계획은 평가서본안시 구리공공하 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변경 됨	미반영

대책위 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 고
2019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단지 EIA(Draft)	-	-
1. 환경영향 측정 조사 지점의 적정성 부족	-	-
-악취와 수질의 영향이 큰 하수 처리시설이 도면 표시	○ 평가서초안의 사업지구내 신설하수처리장 설치계획은 평가서본안시 구리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악취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함	미반영
-대기 조사 시기는 3계절 이상으로 1회 3일 연속 매시간 측정	○ 대기질 조사방법, 횟수 등은 평가협의회 결정에 따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3일 연속으로 측정하여 값을 제시함	반영
-동식물상일 경우 조사 시기가 철새 동물은 계절상, 육상 식물은 4월, 8월, 10월에 3회 실시(단, 식물은 생육 왕성한 4월에 조사)	○ 생육이 왕성한 시기인 8월에 식물상, 식생,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어류, 담수무척추동물 조사를 실시하였고, 겨울철 새 조사를 위해 12월에 동계조류 조사를 실시하였음. - 1차 (전략) : 2017.10 - 2차 (평가) : 2018.8 - 3차 (평가) : 2018.12 (2019.1추가보완) - 4차 (평가) : 2019.5	반영
-소음과 진동은 경춘선, 1호선 전철, 국도의 누적환경영향이 최대의 정온 시설과 발파 조건에 따른 변화 추이 실시(단, 육사 말 사육시설, 육사 골프장)	○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1호선 전철”은 없고, 경춘선과 국도47호선이 지나가고 있음 ○ 평가협의회 결정에 따라 사업지구로부터 300m이내 정온시설을 조사하여 제시함. 육사 말사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사시 소음발생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어 소음저감대책을 제시하였음	반영

대책위 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 고
-환경영향 조사 지점 누락 (육사, 북한 송전탑, 군부대)	○ 육군사관학교 일대 현장조사 실시함 - 업무협조 공문을 시행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보안 시설을 제외하고 조사가 가능한 현황시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영향예측지점(대기질, 소음진동 정온시설)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이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반영
	○ 북한 송전탑(전파연구소 통신시설) 현장조사 실시함 - 전략환경평가시 전파연구소 통신시설 주변 주거지역 분포현황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총 4개지점(약 50~560m)을 선정하였고, - 실측조사결과 통신설비에 의한 인체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반영
	○ 군부대(51**부대) 현장조사 실시함 - 전략환경평가시 “부대 관계자 탐문조사결과 해당 부대는 수송을 목적으로 운영중이며, 위험물 취급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내용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고, - 해당부대는 사업지구계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해당 부대지역 인근은 토지이용계획상 공원녹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함. 51**부대는 각종 보급물품의 포장지, 종이 등을 수집하여 후송시키는 업무를 하는 곳으로 위험물 보관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반영
2. 지하수 환경 기준 적용 -먹는 물 기준항목에 NO ₃ -N 10mg/L 이하인데 NO ₂ -N 20mg/L로 제시(SEA에도 동일)	○ 환경질 측정 3차 조사시 지하수측정망 문헌조사(국가 환경 DB문헌조사(환경부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결과를 제시와 병행하여 GW-1, GW-2 지점에서의 질산성 질소(NO ₃ -N)항목에 대한 실측조사를 실시하여 제시함	반영

■ 첨부#2 한O석 평가서초안 문제점 체크리스트

구 분	의 건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순 번	문 제 점	쪽수	비 고		
평가서 초안 공람	한O석	1	○제1장 1.1.3 사업의 내용 → 수용인구 및 세대 주택건 설계획 6,839세대중 공동주 택 + 주상복합이 6,704세대 로 환경부와 최종협의시 “쾌 적한 생활환경과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은 중·저 밀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으 로 협의 함. → 인근 지구보다 고밀도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중·저밀도 개발이 아님	4 752	○별내지구의 약2 배 갈매보금자리 지구의 약 1.5배 고밀도개발임. ○용적율 180~ 220%가 중·저밀 도 개발인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상 중저밀도 기준인 199인/ha 이하(평균 용 적률 185%)를 준수하 여 밀도계획을 수립하 였고, ○공동주택 용적률은 갈 매지구와 유사한 수준 으로 계획하였음	반영
		2	○제1장 1.1.3 사업의내용 [표 1-1] 수용인구 및 세대 내용중 단독주택 135호의 수용인구 356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 용인구의 예측이 잘못됨	4 27	○통상적으로 단독 주택 1호에 5세 대가 살 수 있도 록 허가가 나는데 5 세 대 x 2 . 6 명 =13명 135호 x 13명 = 1,755명이 아닌 지요?	○인구 및 세대수 산정시 개별 건축에 따라 차이 가 있으므로 단독주택 은 1호당 1세대로 계획 하였으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물량 계획시 전세율 등을 감안하여 1호당 5세대로 계획하 였음	반영
		3	○제1장 1.1.3 사업의 내용 → 공공주택지구지정 변경 내역 ; 면적 799,219㎡ → 798,310㎡ (909㎡ 제척) → 주민중에도 단절지로 제척 해 달라는 토지주가 있었으 나 묵살됨. → 국방부 육사골프장은 제척 시켜줌(특혜)	4 10 20 735 736	○국방부 소유인 갈 매동 산 2-181(648㎡) 산 2-154 (397㎡) 중 909㎡를 제척 시켜줌. → 주민과 차별 대우	○현재 이용중인 태릉C.C 18번홀 부지가 일부 편 입되어 제척한 사항임	반영
		4	○제1장 1.1.3 사업의 내용 [표 1-1] 단독주택은 전체 이주 자 택지 대상자에 맞게 호수 가 고려 되어야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180호였는데 135호로 줄어 듬.	4	○이주자 택지 대상 자 파악후 Fix 요 망.	○단독주택지는 주민의견 을 적극 반영하여 위치 및 호수를 조정하였으 나, 지구계획 수립단계 에서 대상자 파악 후 세대수를 확정하는 것 은 어려움	반영

구 분	의 건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순 번	문 제 점	쪽수	비 고		
평가서 초안 공람	한O석	5	○제1장 1.1.3 사업의 내용 [표 1-2] 토지이용계획(안) 군사시설 11,012㎡를 국방부 육사골프장 주차장 용지로 대토를 줌. →현재 국방부 토지인 갈매동 490, 490-1, 산109-2, 산 109-16, 산 109-82, 산 109-83 총 11,008㎡는 그린 벨트 토지이며, 토지이용 효율 성이 낮은 토지인데, 개발후 개발된 토지 11,012㎡를 1:1 로 대토로 주는것임. →주민과 차별대우이며, 국방부 에 주는 특혜임. →정확한 법적근거가 없다면 주 민에게도 1:1로 대토를 달라.	5 6 28 29	○이 사업의 목적인 “청년·신혼부부등 젊은계층의 주거 안정과 서민 및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 거생활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합 당한 토지이용계 획이 아님. ○골프치고 노는곳 인데 주차장부지 를 늘려주는 계획 은 취소하라.	○토지이용계획상 군 사시설은 당초 국방 부 소유부지를 현재 시설(태릉C.C)과 연 접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획 되었음	반영
		6	○제1장 1.1.3 사업의 내용 [그림 1-1]의 주요소 용지는 인근에 이미 주유소가 있는 곳으로 구리 갈매역세권 서북측 끝으로 주민 이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않은 곳 으로 위치이동을 요망함	6	○인근에 주요소 2 개소 있음.	○당초 토지이용계획 상 주유소는 배제하 였고, 훼손지 복구대 상지에 남측 하단에 LPG충전소로 계획함	반영
		7	○제1장 1.1.3 사업의 내용 [그 림1-1]의 단독주택용지(이주자 택지)의 위치는 학교와의 통학 거리, 중심상업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을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한 지역임.	6	○단독주택용지의 위치 변경 요망 ○지역주민의 의사 반영요망.	○학교 위치는 전체적 인 부지형상과 주거 용지별 학생발생을 등을 고려하여 중앙 공원에 연접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 여 단독주택지 위치 를 조정함 ○단독주택지 인근에 는 공공청사, 문화시 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 획을 변경함	반영
		8	○제1장 1.2.4 토지환경분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최종협의 내용(환경부)에는 “생태면적을 달성목표는 45% 맞추어 계획 을 수립하여야 함”으로 협의함. 본 평가서에는 계획생태면적을 41.5%로 계획하였음. → 생태면적을 45%로 계획 재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 안 재작성 요망	10 752	-	○주민의견 및 관계기 관 협의의견 반영을 통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생태면 적율은 42.9%로 상 향조정하였음	부분 반영

구 분	의 견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 고
		순 번	문 제 점	쪽수	비 고		
평가서 초안 공람	한O석	9	○제1장 1.2.5 생활환경 분야의 마. 전파장해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 된다고 함 1) 전파연구소 통신시설(탑2개)에서 거리별, 공간별(고도별) 측정자료 없음. 2) 사업지구내 전파연구소 통신시설 에 대한 전파장해 조사지점은 E-3 한곳에 불과함. 3) E-3 지점보다 전파연구소 통신시 설 근거리에 계획된 공동주택 및 학교용지 주변에는 측정지점 없 음. 4) 측정 조건중 전파연구소 통신시설 의 가동유무가 표기되어 있지 않 고, 시간 및 측정횟수도 오전·오후 로만 기록되어 있어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없음. 5) 현재 사업지구 인근 및 사업지구 에는 TV REMOCON이 동작이 안될 때 있음, 유선 전화 설치 불가지역이 있음 (잡음, 위잉소 리, 군대용어 소리가 들림 등으 로 통화불가), 휴대폰 통화시 송· 수신 대화내용이 끊길 때 있음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	12 679	○전파장해에 대한 재조사 요망 ○방송수신 전파장 해도 전파연구소 통신시설 가동중 에 조사해야 정확 한 결과를 알 수 있음. ○육군사관학교에도 별도의 통신시설 또는 전파장해 요 소가 있는지 Check하여 전파 장해에 대한 재검 토 필요함.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전파연구소 통신시 설”의 전자계 측정, TV 수신장해 조사, 전 파장해 예측 실시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작성함 ○발생원으로부터 주거 지까지의 이격거리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 등을 조사토록 규정됨 ○이에 따라 전파연구소 통신시설 주변 총 4개 지점(약50m~560m이 격) 선정함 ○전자계 조사는 국립전 파연구원고시 제 2014-2호 “전자파강 도 측정기준”에 따라 측정함 ○측정결과 전파장해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 으로 조사됨 ○육군사관학교 관계자 탐문조사 결과 별도의 통신시설 또는 전파장 해 요소는 없는 것으 로 조사됨	반영
		10	○제1장 1.3.3 수환경분야 가. 수질 및 수리수문 2) 운영사·오수처리 : 신설하수 처리장 (Q=6,000㎥/일) 설치된다고 함. → 하수처리장 처리이후의 수질에 대한 사후관리 및 악취 관리가 필요함.	16	-	○사업지구내 신설하수 처리장 설치계획은 공 공하수처리시설로 연 계처리하는 것으로 변 경됨에 따라 악취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함	미반영
		11	○제3장 3.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의 설정 [그림3-1] 불암산은 동식 물상 조사가 문헌 및 탐문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으나, 식물상 조사 표, 식생조사표, 조류, 육상곤충, 양서·파충류, 어류, 담수무척추동물 현지 조사표가 부록에 없음. → 육상동물 현지조사표만 있음(1장)	39 91	○불암산에 대한 재 조사 필요	○협의회결정(2017.11) 에 따라 불암산 일대 에 동식물상 조사를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실시하였고, 현지조사 표(탐문조사 포함)를 부록편에 제시함	반영

구 분	의 건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 고
		순 번	문 제 점	쪽수	비 고		
평가서 초안 공람	한O석	12	○제4장 4.2.2 사업지구 현황 다. 수계현황 [표4.2-6]에 내촌면을 내촌동으로, 별내면을 별내동으로 (2곳) 잘못 표기함.	51	○내촌동 신팔리, 별내동 요암리, 별내동 화접리는 대한민국에 없는 행정구역임	○정부공인 통계자료를 인용하였으나, 현재 행정구역명으로 바로잡아 제시함 (내촌동 → 내촌면, 별내동 → 별내면)	반영
		13	○제4장 4.6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현황 내용에 “철도”, “송신탑”, “51**부대”, “공장” 누락됨	66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6조 (지역개황조사)5항 “공장, 공항, 도로, 철도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시설물”을 기록해야 함.	○철도, 51**부대, 공장현황은 4장 지역개황편에 제시함 ○송신탑은 7.5.5전파장해편에 제시, 51**부대는 사업지구외 지역으로 위험물 취급은 하지 않는 곳으로 확인됨 (2차탐문 조사실시: 2019.5.20)	반영
		14	○제4장 4.11 주변시설 교통상황 및 교통시설 확충계획에 경춘선 : 단선, 중앙선 : 단선으로 표기되어 있음 → 현재 모두 복선으로 전철 운영중이며 초등학생도 복선으로 알고 있는 내용임.	71	○경춘선 복선화 2010년 12월 21일 개통 ○중앙선 복선화 2005년 12월 16일 개통	○주변 교통현황관련하여 경춘선, 중앙선 복선으로 정정 표기함	반영
		15	○제5장 5.2.8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표52-6] 사업지구 연접 골프장으로 인한 주거지역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폭의 완충녹지 확보 및 경사 10도 이상 지역은 원형 보전 방안검토 → 현재 개인사유지에 골프공이 많이 날아 들어오며, 주차된 차량 유리가 파손된 경우 있음. → 완충녹지폭은 현재 골프공이 어디까지 날아오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골프공 숫자포함) → 근본적인 대책은 골프장 울타리를 높이는 것이라고 사료됨	92	○개발이 되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되면 사고건수도 늘어날 것이다. 완충녹지에 사람이나 동물이 들어갈 수 있다면 사고확률은 더 높아질것이 뻔하다.	○사업지구 연접 골프장(타격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거지역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제시함 ○완충녹지 확보 등의 골프공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였고, 골프장 울타리 개선문제는 태릉 CC측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반영

구 분	의 견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 고
공청회	홍0명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환경영향평가 시행의 목적과 평가기준이 왜 누락되어 있는가? 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과 기준이 없는 것이 무슨 보고서냐? 사업의 개요에 목적과 기준을 제시해야되지 않는가? 어떤 보고서든 목적과 기준이 없으면 책자가 아니지 않은가?	○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평가서초안은 정당한 절차 및 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함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위원 중 임순빈 위원 선정 부적절한 것 아닌가? 임순빈 위원은 직접 관련한 적이 없는데 언제, 어떻게 협의회 위원으로 되었는지 설명해주기 바람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함.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까지 포함해서 심의할 수 있음. ○ 구리시 주민 대표 자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국토부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임0빈 위원의 경우 구리시의 추천받아 평가협의회 위원으로 선정한 것임 ○ 전략환경평가서의 절차적 위법성 관련 행정소송 결과 법령위반사실이 인정되지않는 것으로 판결남 (2019.6.14)	-
		○ 인구 20만명이 증가하면 큰 인구인데, 교통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본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갈매지구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하여 광역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 사업지구와 인접된 갈매지구는 이미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 상태이고, 본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사업규모가 24만평(약 79만 제곱미터)으로 광역교통대책수립 대상은 아님. ○ 그러나, 광역적인 측면에서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고자 갈매 IC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구 20만 유입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보완대책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음	-
		○ 전략환경영향평가지 제기한 주민 의견과 그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설명을 요청함. 실질적으로 목차 내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없고, 의견에 관한 것이 평가서 내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다는 내용이 없음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이후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2018.6.20.(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812호)에 공개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반영검토사항을 별도로 검토하여 부록편에 제시함	반영

구 분	의 건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 고
공청회	이O성	○평가서초안에 지하수 수질항목 중 질산성 질소 분석이 누락되었고, 아질산성 질소의 경우 환경기준에도 없는데 불구하고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암모니아성 질소에 대한 분석값은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함 ○ 페이지 338~340에 지하수질 환경기준에 적합한 항목을 측정하게 되어있는데, 질산성질소가 아니라 338페이지에 아질산성 질소를 조사 하였고, 이는 전략환경평가때와 똑같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질산성 질소에 대한 결과를 문헌조사로 제시된 바 있음 ○질산성 질소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문헌조사와 현지 조사결과를 함께 제시함 ○암모니아성 질소의 경우 분석결과 불검출되어 평가서초안에 제시하였음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질산성질소 등의 수질분석 결과를 제시함	반영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제시된 사업지구내 발생 하수처리 방법은 사업지구내에 하수처리장 신설을 계획하였는데 하수처리방법이 변경되었는지 설명을 요청함	○평가서초안 단계에서 하수처리방법은 사업지구내 신설처리 방법으로 검토되었으나,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구리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변경됨	반영
		○본 사업지구는 수질오염총량 대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언급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함	○수질오염총량검토서를 작성해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총량할당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수질오염총량 할당 협의 문서를 평가서본안에 제시함	반영
		○전략환경평가서 p294 오수발생량 원단위 390(L/인·일)이고, 환경평가서초안에서는 315(L/인·일)로 계산하였다. 수치상 서로 데 이터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함	○오수발생량 원단위는 구리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오수처리 계획의 설계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함	반영

구 분	의 건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 고
공청회	한O석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내 공동주택은 중·저밀도 개발인가? 중저밀도 개발이 아닌 고밀도 개발로 판단되니 중저밀도 수준으로 개발이 요망됨	○구리갈매역세권 지구는 중·저밀도인 199인/ha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음	반영
		○생태면적을 달성목표가 45%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평가서초안에 제시된 계획 생태면적율은 왜 41.5%로 제시되어 있다. 환경부와 약속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생태면적율을 45%로 맞추어 개발계획을 변경하기를 요청함	○계획생태면적율은 42.9%로 상향조정하여 제시함	부분 반영
		○왜 육사 골프장만 제척지와 대토가 반영되어 있는가? 육사 골프장 주차장 부지를 늘려 주며,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대토는 주민을 세 번 울리는 행위이다. 국방부에 주는 11,012 제곱미터의 대토는 협의양도인 택지 등으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함	○사업지구내 군사시설의 토지는 기부 대양여사업 또는 국방부 불용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 등의 행정 절차 이행해야 되는데, 국방부 소유 땅의 토지를 동의를 안된 상황이고, 사업지구내 토지정형화 입장에서 국방부 동의를 구해 1:1방식으로 교환하게 된 사항임	미반영
		○전파연구소 통신시설에서 거리별, 공간별 측정자료가 없고, 사업지구내 전파연구소 통신시설에 대한 조사지점은 E-3 한곳에 불과함 ○방송수신 전파장해도 전파연구소 통신시설 가동중에 조사를 해야 정확한 결과를 알수 있는데 전파연구소 운영자료, 탐문조사 내용이 없다. ○유선전화 통화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육군사관학교의 통신시설 또는 전파장해 요소가 있는지 체크해야 된다. 원소리, 잡음의 원인 파악이 필요함 ○전파장해에 대한 영향이 정말 없는지 재조사를 요구함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관련규정에 의해 예측한 결과에 전파장해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공릉동 산230-1번지에 전파발생원인 전파연구소 통신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정보 자료를 인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총 노출지수는 인체보호기준 10이하인 것으로 제시됨 -전파발생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E-1지점에서(50m이격)에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TV리모콘의 경우 적외선으로 통신하여 발생하는 전자파와는 대역자체가 다르므로 영향없는 것으로 조사됨 -육군사관학교 관계자 탐문조사결과 전파장해를 유발하는 통신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이격거리별, 고도별 영향조사 관련 문헌조사 내용 및 전파연구원 자료 등의 자료를 추가 제시하였음 -전파연구소 통신시설로 인한 사업지구내 전파영향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하여 모니터링할 계획임	반영

구 분	의 건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 고
공청회	한O석	“육사 골프장으로 인한 주거지역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폭의 완충녹지 확보 및 경사 10도 이상 지역은 원형 보전 방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 골프공이 넘어오는 거리 및 숫자 그리고 계절 별로 많이 넘어 오는 지역 등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전혀 조사된 데이터가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완충녹지에 사람이나 동물의 출입도 금지해야 하는 저감대책이 필요함을 요구함	- 사업지구 서측 경계(태릉CC 연접)지역은 안전사고예방 및 지맥과의 이격거리 확보 등을 위해 완충녹지 폭 확대 등을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함 - 태릉CC 18번홀에서 갈매동 490-1일원에 골프공이 넘어오는 것으로 탐문조사되어, 완충녹지 폭 확대 및 안전망 설치에 대해 추후 해당 골프장과 협의할 계획임	반영
		교통시설 현황(경춘선, 중앙선) 최신 자료 아님	철도현황(경춘선, 중앙선)표기는 정정하여 제시하였음	반영
		사업 지구 주요 하천 현황에 주소지 틀림	하천 현황에 대한 주소지는 행정구역명에 맞추어 수정 제시함	반영
		멸종 위기 II급 맹꽂이는 장마철 조사가 필수인데, 장마철에 조사 되지 않았고, 갈매동 490-1 주변지역 등에 맹꽂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맹꽂이의 서식지 이주 대책이 필요함	장마철에 대한 조사(8월 우기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음	반영
		환경영향평가가서 내용이 어렵고, 전문적인 용어 설명 부족하다	부록편에 전문용어 설명을 제시함	반영
		불암산에 대한 식물상조사표,식생조사표,조류, 육상곤충,양서/파충류,어류 담수 무척추동물 현지조사표가 부록에 없음	불암산 일대는 탐문조사 및 문헌조사를 병행하여 조사하였고, 현지조사표는 부록에 제시하였음	반영
		구리갈매역세권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법,시행령,규칙을 위반하였다. 작성규정을 무시하였고, 주민의견서를 제출하지만 수렴되는 의견은 없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였고, 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제출받아 토지이용계획에 일부 반영하였음	-

구 분	의 견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 고
공청회	하O성	○ 2018.7.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9호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처분 취소한다(이미 추진(2015.1)하고 있는 “갈매역세권 개발사업”과 중복됨)	○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관련 적법 절차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항임	-
		○ 갈매역세권 주민 모두는 한미음으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를 명령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지구지정 또한 위법하다(협의회 구성, 서면심의 등)	○ 협의회 구성 및 서면심의 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항임	반영
		○ 평가협의회 구성원 “임00” 선정의 부당성		
공청회	주민1 (남자)	○ 당초 토지이용계획(안) 초안과 달라진 내용에 대해 설명 요청함. 주민요청사항에 대한 수용여부 및 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	○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하여 계획내용에 검토반영함 - 북측 이주택지 일부 갈매역인근 이전, 지구내 종교용지 추가확보 등 검토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함	반영
		○ 훼손지 복구용지 조정된 이유(2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든 이유?)	○ 훼손지복구용지는 훼손지면적의 10~20%하게 되어있고, 구리시와 협의중에 있는데, 추가확보지역이 많지 않고, 구리시 요청에 따라 지구밖(장자공원) 일부면적을 사업부지의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 사항임. ○ 사업지구내 녹지확보차원에서 당초 북측지역의 훼손지복구용지 지역을 “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훼손지복구 대상지 사업지역은 사업지구가 속한 행정구역에 해당되고, 관련 사항에 대해 구리시와 협의하여 추진중에 있는 사항임	반영

구 분	의 견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 고
공청회	주민2 (남자)	◦ 불암산에서 오는 동물(고라니 등)통로 (생태통로) 없는데 그 이유는?	◦ 불암산과 사업지구는 왕복 6차선 도로인 화랑로에 의해 오래전부터 이미 야생동물 이동경로가 단절된 상태임. 인간의 간섭과 교란 요인으로 불암산 일대에서 사업지구로 유입되기는 매우 어려움. 사업지구 내에서 관찰된 고라니는 동측의 갈매지구가 개발되기 이전부터 유입되어 서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불암산과 사업지구를 연결하는 생태통로는 지형분포 특성상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주민3 (여자)	◦ 인근 별내지구 면적에 비해서 고밀도 개발이 아닌가? 우리도 저밀도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학교, 교통, 타기관 의견 등 종합적인 여건 등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겠고,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 지구는 중·저밀도 199인/ha로 개발 계획을 수립함	반영
		◦ 제비조사 관련 개체수량이 맞지 않다	◦ 조류 조사관련 조사방법 등은 전문가에 의해 조사되었고, 제비 개체수량은 조사일, 조사자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동식물상 조사표(야장)에 제시하였음	반영
		◦ 이번 공청회가 끝이 아니다. 주민요구사항 다시 수정해서 공청회 다시 해달라	◦ 주민의견수렴해서 의견수렴 반영여부를 공개하는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하겠음	-